

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○ 존경하는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님!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양천구 제2선거구,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허 훈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
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현재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에서는 서울시민의 인권 보호 및
증진을 위하여 ‘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’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
되어 있습니다.

○ 그런데 ‘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’ 위원으로 안전에 대한 조사를
담당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참여하여 의결을 행사하고 있어서,
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됩니다.

○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

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의결의 객관성을 도모하고
서울시민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